

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3. 4. 2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4월 26일 14:00 ~ 14:42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권 대 영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유 재 훈 위 원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3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2차 임시 및 제8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3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3년도 제2차 임시 및 제8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07호 『○○○○○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한 심사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의 규제개선 요청에 대해 금융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을 부과하고 조건부 수용하는 내용

○ (위원) 부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상황을 잘 관찰하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08호 『(주)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집합투자규약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의 면제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이 결론의 취지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앞으로 새로 있을 건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반영해서 하면 잘 될 것 같음. 다만, 종전 건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결국 수익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데 아마 이 건에 있어서도 동의를 구하기가 용의치 않은 현실적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음. 종전 건 같은 경우 건수로 따지면 그렇게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한데 저희가 금투협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또 건별로(case by case)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상황을 말씀 올림.

○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는 규약의 변경이라고 보기가 어렵지만 형식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 규제는 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음. 말씀하신 대로 건별로 판단을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음.

- (위원)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8호 안건과 관련하여 (주)하나대체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집합투자재산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항으로 추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주)하나대체자산운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09호 『마스틴투자운용(주)의 마스틴파트너스(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마스틴투자운용(주)의 마스틴파트너스(주)에 대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0호 『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민금융진흥원이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임원 임면절차, 회의체 운영 관련 등 정관의 일부 내용을 서민금융법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1호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의 (주)신한금융지주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주)가 (주)신한금융지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2호 『한국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예외승인안』, 제113호 『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예외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대우조선-한화 기업결합으로 인한 산은·수은의 동일차주에
대해 신용공여한도를 예외승인하는 내용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4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5호 『한국예탁결제원 정관 일부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예탁결제원 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6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수요예측시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탄소배출권의 위험값을 완화하며 그간의 자본시장법 개정 및 금소법 시행에 따른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ESG 금융이나 이런 쪽이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은지? 얼마 전에 RE100 홈페이지에 세 나라 국기가 떴음. 대한민국 국기도 들어가 있음. 클릭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2%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높이라고 하는 권고의 의미로 태극기가 올라옴.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금 현재 기타자산으로 분류된 것을 일반 금융상품 위험값 18%로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탄소배출권이 좀 더 잘 거래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ESG금융을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해서 금융위원회가 무언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임.

○ (위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검토하여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7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등록하는 내용

○ (위원) 사실 이것은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에
문제는 없겠지만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은 IBK의 자회사이고,
IBK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이 있음.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공공금융기관의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좋으나 공공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방향성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탄소배출권
거래라든지, 이런 쪽의 고민을 산업은행이 되었든 기업은행이
되었든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음. 일반적인 투자증권회사처럼
요건이 되면 바로 허가를 하는 구조보다는 뭔가 그러한 것들을
한 번쯤은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림.

○ (위원) ESG금융이나 탄소배출권 같은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생각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8호 『하이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추가등록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이투자증권(주)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에 대하여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를 추가등록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19호 『부국증권(주)의 부국캐피탈(주)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국증권(주)의 (가칭) 부국캐피탈(주)에 대한 출자승인 신청에 대해 출자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20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농신보 구상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2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3호 『외환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현황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제8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42분 폐회)